

등록번호	감사담당관-9470
등록일자	2022.10.11.
결재일자	2022.10.11.
공개구분	비공개(5)

주무관	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협 조			

---

## 2021년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채용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

---



서 대 문 구  
감사담당관

## || 목 차 ||

<b>I. 감사 개요</b>	<b>1</b>
<b>II. 수감기관 현황</b>	<b>2</b>
<b>III. 감사결과</b>	<b>3</b>
1. 총 평	3
2. 지적사항 총괄표	5
3. 지적사항	5
4. 권고사항	6
<b>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b>	<b>8</b>
1. 감사결과 처분 기준	8
2.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심의	9
3.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9
<b>V. 행정사항</b>	<b>10</b>
<b>【붙임】</b>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심의결과	

# 2021년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채용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

## I 감 사 개 요

### □ 추진목적

- 국민의 공정채용 기대에 부합하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지속적 관리 필요
- 잔존한 채용 비위를 근절하고 공정채용 문화를 정착

□ **감사부서** :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7개 부서(경영안전팀, 문화체육회관,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여성가족팀, 형무소역사관, 구립도서관, 공공시설팀)

□ **감사범위** : 2021.1.1. ~ 2021.12.31.까지 실시한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업무

□ **감사기간** : 2022. 8 29.(월) ~ 9. 6.(화) (기간 중 7일)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2명

□ **감사장소** :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내 감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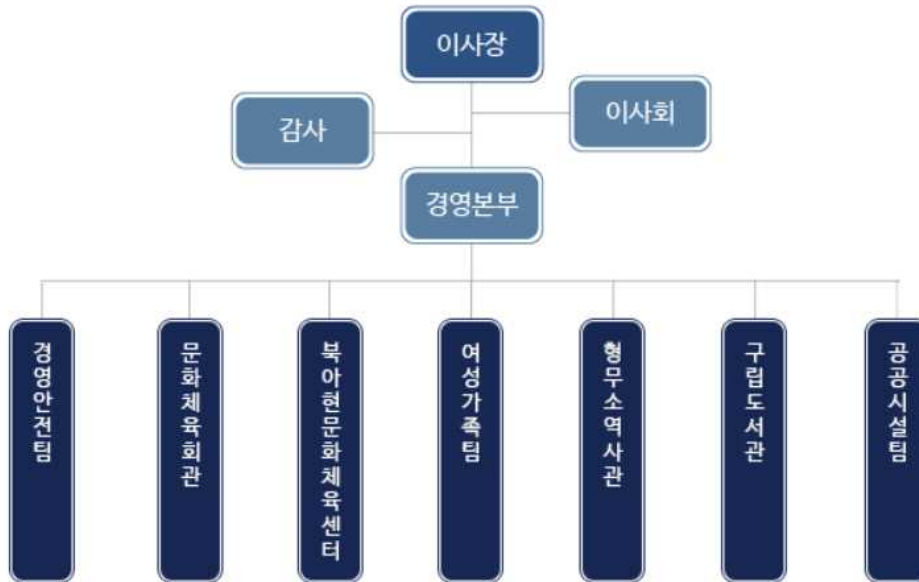
□ **감사방법** : 서면, 시스템 및 실지감사 병행

### □ 감사중점사항

- 신규채용 관련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부당지시 여부 및 이에 따른 인사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 채용계획 수립·공고, 서류·필기·면접 등 채용 세부절차별 운영 실태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친인척 청탁 여부 및 전환절차 적정 여부

## II 수감기관 현황

### □ 조직현황



### □ 인력현황

(2022.10.1.기준 단위: 명)

구분	계			임원			통합직			일반/전문직			무기계약직			기간제직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계	198	93	105	1	1	0	18	14	4	46	19	27	84	40	44	49	19	30

### □ 채용현황

○ 2021.1.1.~2021.12.31.에 실시한 신규 채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경영안전팀	문화체육회관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여성가족팀	형무소역사관	구립도서관	공공시설팀
계	53	32	8	4	-	2	4	3
신규채용	48	32	6	4	-	1	3	2
정규직전환	5	-	2	-	-	1	1	1

### III 감 사 결 과

#### 1. 총 평

이번 2021년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채용실태 특정감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구 산하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2020년 전수조사 이후 2021. 1. 1. ~ 2021. 12. 31. 기간 중 실시한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업무를 대상으로 ①친·인척 현황조사 등을 통한 임직원 채용청탁·부당지시 여부 ② 채용계획 수립 및 공고, 서류·면접전형 등 세부 절차별 운영 실태 ③ 전환대상자 결정 및 전환 절차의 적정성·타당성 점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다.

신규채용의 경우 통상적으로 채용공고를 실시하고 서류·필기, 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하게 되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무기 계약직 취업 규칙」에 따라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다.

2017년부터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만큼 채용계획 수립·공고, 서류·필기·면접 등 채용절차별 준수사항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었고 주요 점검사항인 임직원 친인척 현황, 임직원의 부당지시·채용청탁 등의 비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채용공고 시 예비합격자 제도 안내 누락’,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안내 소홀’ 2건의 지적사항과 ‘무기계약직·기간제 직원 채용 규정 개선’, ‘인사위원회 연임 규정 개선’, ‘채용내정자 부정합격 시 합격취소 동의 확인 철저’ 3건의 권고사항을 확인하였다.

채용 응시자들이 응시 단계에서 예비합격자 제도의 취지와 규모, 유효기간 등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채용공고 시 예비합격자 제도를 명시하여야 함에도 2건의 채용공고 시 이러한 내용을 누락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또한,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여야 함에도 36건의 ①채용 공

고 시, ②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③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공고 시 이의제기 절차를 누락한 것을 확인하였다.

채용 시 예비합격자 제도 및 이의제기 절차는 채용 응시자에게 명시해야 하는 내용인 만큼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무기계약직 취업 규칙」,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기간제직원 취업 규칙」에 남아있는 특별채용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인사 규정」 인사위원회 연임 규정에 연임제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임용대상자(채용내정자)에게 별도로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 하는 서류를 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건에 대해 도시관리공단은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통해 향후 동일·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 지적사항 총괄표

(단위 : 건, 천원)

합 계			징계	시정	기관 경고	개선 요구	권고	통보	현지 조치
총 건수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금액							
5	-	-	-	-	2	-	3	-	-

## 3. 지적사항

### 1 채용공고 시 예비합격자 제도 안내 누락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및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인사 규정 시행내규」 제3조 제6항 및 제11조의 2 제4항에 따르면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 제도를 시행하는 채용시험의 경우 그 취지와 예비합격자 규모, 유효기간 등 주요 내용을 채용공고에 명시하여야 함.

⇒ 2021년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을 2회 실시하면서 채용 응시자들이 응시 단계에서 예비합격자 제도의 취지와 규모, 유효기간 등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채용공고 시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음.

## 2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안내 소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및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인사 규정 시행내규」 제11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채용계획에 따라 각 채용 단계별로 탈락자 중 일정 규모의 인원에게 대하여 순번을 부여하여 향후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여야 함.

⇒ 2021년 공개채용 및 경력채용을 하면서 ①채용공고 시, ②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③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공고 시 이의제기 절차 안내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4. 권고 사항

### 1 무기 계약직 · 기간제 직원 채용 규정 개선

#### ○ 현황 및 문제점

-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인사 규정」 제7조(채용원칙)에 의하면 “직원 신규 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

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음. 경력경쟁의 경우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내·외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

- 그런데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무기계약직 취업 규칙」 제7조(채용방법) 제3항에 의하면 “단시간 근로자 및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은 부서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기간제직원 취업 규칙」 제7조(채용절차) 제4항에 의하면 “단시간근로자 등 임시직의 고용은 부서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고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무기계약직·기간제 직원 중 단시간 근로자 및 초단시간 근로자 등 임시직 직원을 부서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고용하는 것은 특별채용에 해당 함.

-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및 직업안정법 제2조(균등 처우)에 의하면 채용과정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서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고용’하는 특별채용 조항은 구직희망자를 차별하는 불공정한 조항임.

## ○ 권고사항

-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인사 규정」 제7조(채용원칙),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르면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 경력경쟁시험만 규정하고 있고 특별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채용의 공정성·투명성을 훼손하는 특별채용 규정 보완

## 2 | 인사위원회 연임 규정 개선

### ○ 현황 및 문제점

-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인사 규정」 제37조(구성)에 의하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공단에 인사위원회를 두며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고 외부 인사 위원의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1/2 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의 내부규정은 부패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며,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의하면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 등 이해충돌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해충돌 방지장치가 규정되어 있는지 등 부패유발요인을 평가할 수 있음.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연임제한규정이 있으며, 계속된 연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착관계를 방지하도록 연임제한규정 마련을 권고할 수 있음.

### ○ 권고사항

- 계속된 연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착관계를 방지하도록 연임제한규정 마련

## 3 채용내정자 부정합격 시 합격취소 동의 확인 철저

###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및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인사 규정 시행내규」 제12조 제5항에 따르면 이사장은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 전에 임용대상자(채용내정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함.

-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채용·최종합격자 공고 시 공고문에 “채용비리 적발 시 합격취소, 5년간 응시 제한 등”을 안내하고 있고, 최종합격자 임용등록 시 임용대상자로부터 「임직원 친인척 관계 확인서」 등을 징구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의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라고 보기에는 제한적인 내용으로 국한되어 있음.

## ○ 권고사항

- 채용 전에 임용대상자(채용내정자)로부터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 징구

## IV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 1. 감사결과 처분 기준

#### □ 처분기준

- 징 계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 시 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
-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권 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통 보 :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주의요구·개선요구·권고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현지조치 :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시정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

#### □ 신분상 조치

- 훈 계 :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 주 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 2. 감사결과 처분심의회 심의

- 개최일시 : 2022. 9. 20.(화) 14:00 ~ 15:00
- 심의위원 : 6명(감사담당관 및 각 팀장)
- 심의내용 :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및 신분상 조치 양정 심의
- 심의결과 : 별첨

## 3.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건, 원, 명)

연번	부서	안 건 명	심의결과		
			처분 종류	재정상 조치금액	신분상 조치인원
5건 (기관경고 2, 권고 3)					
1	도시관리공단	채용공고 시 예비합격자 제도 안내 누락	기관경고		
2	도시관리공단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안내 소홀	기관경고		
3	도시관리공단	무기계약직·기간제 직원 채용 규정 개선	권고		
4	도시관리공단	인사위원회 연임 규정 개선	권고		
5	도시관리공단	채용내정자 부정합격 시 합격취소 동의 확인 철저	권고		

## V 행정 사항

### □ 지적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 제출

- 조치방법 : 붙임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의 건별 ‘조치할 사항’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
  - 시정·기관경고 : 2개월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출
  - 개선요구·권고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제출

※ 2개월을 초과하는 사항은 2개월 이내 추진 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  
계획서를 우선 제출하고 추후 집행계획에 따라 최종 결과 제출

○ 조치결과 제출 기한 : 2022. 12. 7.(수) 끝.